

구분	환산율	경력 내용
제1호	100%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3. 우리공사 근무기간 4. 필요에 의해 특정 자격증 소지자를 제한 채용할 경우, 해당 자격증의 대표 직종에 종사한 근무기간
제2호	90%	제1호 외의 법인 또는 각종단체 등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제3호	50%	제1호, 제2호를 제외한 근무 경력
기타	100%	1. 박사학위 3년 근무경력 <u>추가인정</u> (공사 직무 관련 학위 한정) 2. 석사학위 1년 근무경력 <u>추가인정</u> (공사 직무 관련 학위 한정)

- 가. 각종 경력환산에서 같은 환산요율을 적용받는 경력은 각각의 기간을 합산한 후 월 단위 이하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나. 입사지원 시 제출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경력기간을 산정한다.
- 다. 공사 직무 관련분야 학위란 경제, 금융, 경영, 행정, 법학 및 각 대학이 별도로 인정하는 해운·항만 물류분야 등 공사 직무와 관련된 학위를 말한다. 단, IT 및 기록관리학 등의 특정 직무에 한정된 학위의 경우 해당 직무분야를 지원할 경우 학위경력을 별도 인정한다.
- 라. 법인 또는 각종단체의 파산·해체 등 제반사유로 서류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한 경력은 경력으로 환산하지 아니한다.
- 마. 증빙서류 제출 시 국외에서의 경력도 국내 경력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바. 경력이 중복되는 기간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우선 시 적용하며, 중복인정하지 아니한다.
- 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시 입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입사 전 경력을 별도 인정하며, 신규입사자부터 본 경력환산기준을 따른다.
- 아. 사장은 업무의 전문성·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할 경우 상기 기준표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자. 상기표는 경력직 입사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 차. 경력환산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적용한다.